

##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
[시행 2016.7.20.] [대통령령 제27357호, 2016.7.19., 일부개정]

### 개정이유

[일부개정]

#### ◇ 개정이유

국토교통부장관 등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실태점검 또는 자료검토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이 개정(법률 제13799호, 2016. 1. 19. 공포, 7. 20. 시행)됨에 따라, 실태점검 또는 자료검토 결과의 공표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실태점검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·징수권자를 확대하고,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종류 중 일부를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## ◇ 주요내용

가. 실태점검 및 자료검토 결과의 공표방법 등(제25조의2 신설)

국토교통부장관,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실태점검 또는 자료검토의 결과, 시설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, 주무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·방송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.

나. 소규모 취약시설 관련 교육업무의 위탁(제27조의2제1항)

안전에 취약한 사회복지시설 등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주체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게 위탁함.

다. 과태료 부과·징수 권한 조정(제29조제3항)

실태점검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실태점검 또는 자료검토 결과에 따른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·징수권자의 범위에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 외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을 포함함.

라. 시설물의 종류 조정(별표 1 비고 제21호 신설)

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종류 중 배수펌프장과 연계되어 있는 수문 및 통문은 배수펌프장 시설의 일부로 보아 배수펌프장과 연계된 수문 및 통문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가 배수펌프장과 일치되도록 함.

<법제처 제공>

### 개정문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박근혜 (인)

2016년 7월 19일

국무총리 황교안

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

◎대통령령 제27357호

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의2를 제25조의3으로 하고,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5조의2(실태점검 및 자료검토의 결과 공표) ① 국토교통부장관,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실태점검 또는 자료검토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.

1. 시설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긴급한 보수·보강 또는 사용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
  2.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② 국토교통부장관,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1. 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
  2. 시설물의 안전상태 및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실태
  3. 조치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
  4. 그 밖에 해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제1항에 따른 공표는 국토교통부, 주무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·방송 등에 공개하는 방법으로 한다.

제25조의3(중전의 제25조의2) 중 "법 제33조의2제2항"을 "법 제33조의2제3항"으로 한다.

제27조의2제1항 중 "법 제38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"를 "법 제38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"로 한다.

제29조제1항 중 "제11호 및 제13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"을 "제11호,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, 제17호의2 및 제18호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제11호 및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"을 "제11호, 제16호, 제17호, 제17호의2, 제18호 및 제19호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제18호 및 제19호"를 "제16호, 제17호, 제17호의2, 제18호 및 제19호"로 한다.

별표 1 제5호나목의 2중시설물란 중 "1중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다중이용 건축물 및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장, 동물원, 식물원, 의료시설, 노유자시설, 수련시설, 운동시설 및 관광휴게시설·일반철도역사·공항청사·항만여객터미널"을 "1중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, 의료시설, 노유자시설, 수련시설, 운동시설,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"로 한다.

별표 1 비고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비고 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제22호 및 제23호로 하며, 같은 비고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3. "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"이란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, 일반철도역사, 공항청사, 항만여객터미널을 말한다.
21. 배수펌프장과 연계되어 있는 수문 및 통문은 배수펌프장에 포함된다.

별표 2의4의 안전점검란 제2호 및 같은 표 정밀안전진단란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건축 분야	공동주택, 대형건축물, 철도 역시설, 관람장, 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, 의료시설, 노유자시설, 수련시설, 운동시설,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, 관광 휴게시설, 지하도상가
----------	--

별표 4 제2호버목 및 서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호 어목을 저목으로 하며, 같은 호에 어목을 다

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버.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거부 ·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44조 제3항제16 호	300만원
서. 법 제3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	법 제44조 제3항제17 호	300만원
어. 법 제3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태점검 또는 자료검토 결과에 따른 시 정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44조 제3항제17 호의2	300만원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실태점검 및 자료검토의 결과 공표에 관한 적용례)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 3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실태점검 또는 자료검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